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



차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

I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3. 제정 목적	3
II	이해충돌 적용 범위	4
III	이해 충돌의 확인	7
	1. 신고 및 제출 의무	7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7
	2)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15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6
	4)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20
	2. 제한·금지행위	23
	1)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23
	2) 가족채용 제한	24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27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32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3
IV	이해충돌 사전 예방	35
	1. 이해충돌 관리 절차	35
	2. 이해충돌 사전 체크리스트	36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체크리스트	36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39
	3)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41
	4) 가족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42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44

V	위반행위 신고 방법	47
VI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50
	1. 징계 및 형벌부과	50
	2. 과태료 부과	50
VII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1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51
	2. 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	51
	3. 이해충돌방지 교육	52
	[별첨] 관련 법령	53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1 추진 배경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 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 4. 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시행 중
- ☞ 다만,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 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2 추진 경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및 법 시행령 제정 공포('21.12.31.), 2022년 5월 19일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시 기	주요내용
2013. 8.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2015.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8. 4.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반영·시행
2019. 3.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2019. 7. 19. ~ 8. 2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2020. 1.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
2020. 5.	▪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
2020. 6.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
2021. 3. 1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
2021. 3. 18. ~ 4. 14.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
2021. 4. 29.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
2021. 5. 1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3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공공기관 및 모든 공직자 등

1 공공기관이란 ?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
- 다른 법령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공직자 등이란 ?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단,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도 포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도 이에 해당함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에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 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하며, 징계 등의 절차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파견근무)

-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의 장 : 교장, 유치원장 등
- 교원 : 「초·중등교육법」상 교감·수석교사·교사, 「유아교육법」상 원감·수석교사·교사 등
- 직원 :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청,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 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기간제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자		
공공기관		비적용대상자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 등 직원, 보직교사, 기간제 교원, 운동부 지도자 등
	유치원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영양사, 행정직원 등 직원

○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위원회의 위원(학교운영위원 등)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기타

- (일반인)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일반인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2항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이해 충돌의 확인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청렴성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1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1 적용 대상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2 의무 내용

공직자는 자신의 1)직무관련자가 2)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1) 직무관련자란?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말함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함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과장·국장·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서 법령·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감독 하였던 사람
 - ※ 퇴직 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그 기관장은 재직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
-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¹⁾인 경우는 제외)

3 신고 및 회피 방법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1)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 관련 직무
 - * 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
-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친족관계 :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 ✓ 재직 및 경력 증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명단, 근로계약서 등
- ✓ 대리, 고문·자문 수행 : 위임장, 고문역 또는 자문 역할 관련 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 ✓ 소유 관계, 거래 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주주 명세서, 차용증서 등
- ✓ 직무수행 관련 : 직제, 정관, 위임전결 규정, 업무분장, 의결서, 재결서 등



- 소속기관장 자신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해야 함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따른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4 공직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방법

공직자가 불공평한 직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공직자를 직무수행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것

- (신청권자)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 (기피신청 사유)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피신청 방법)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
- 기피 신청 사유
-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5 공직자에 대한 기피 신청에 소속 기관의 조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신청 또는 기피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조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조치기한 : 신고·회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조치유형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

공직자 (의무)	사적 이해관계 신고 + 회피 신청	이해관계자 (재량)	기피 신청
↓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예 외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의견 청취) 소속기관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함
- (조치 결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기피 신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당 공직자 및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2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재직했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1 적용 대상

-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 * 대상: 교육감

2 의무 내용

-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근무기간, 근무처 명칭,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활동기간, 활동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3 제출 방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상황 관리
- 공직자가 우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행위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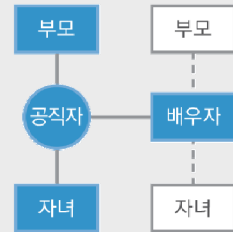
1 적용 대상

-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특수관계사업자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 공직자와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신고대상 거래행위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 그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2 의무 내용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 제5호)

- ⇒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 이때의 '직무'는 법 제2조제5호의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한정된 것과 다름
- 단,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 민 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3 신고 방법

○ 공직자는 다음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신고

-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 관련업무
- 거래내용

- ✓ 금전차용, 금전대부,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기타 재산상 거래의 경우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기타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 소속기관장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4 조치 및 관리

-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조치)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 거래행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대리자 지정 등 조치
 - 조치기한 :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조치유형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 조치(의무)

< 원 칙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예 외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조치결과 통보) 직무 재배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의 확인·점검 조치를 한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에게 통보
- (기록·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5 제출 방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4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해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 차단
- 공직자가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1 적용 대상

○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공직자

- 퇴직자 :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에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 이때의 '직무'는 법 제2조제5호의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한정된 것과 다름

2 의무 신고사항

-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 공직자는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함(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 신고내용

-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직무
- ✔ 직무관련자(퇴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관련업무
- ✔ 접촉 사항 : 접촉 일시, 사유, 접촉유형, 비용부담자
-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예외 사례) 사회 상규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타 신고의무와의 관계

- 법 제15조에 따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신고·제출의무 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

3 신고 방법

-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의 사항을 작성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신고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직무
- 퇴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등
- 접촉 사항 : 접촉 일시, 유형, 사유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4 신고에 대한 조치 및 관리

- 소속기관 장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2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 필요

1 적용 대상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2 적용 대상

-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외부 활동을 금지.

-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외부활동 가능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보고,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가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 요청을 받아 공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행위와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했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제한되는 외부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외부활동 가능
-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강의를 수수하는 등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2 가족채용 제한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공개경쟁 없이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 필요
-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채용 비리를 사전에 예방

1 적용 대상

- 공개경쟁 등의 절차 없이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호)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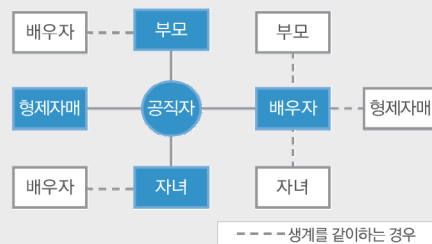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

2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

◆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 (예외) 가족 채용 제한의 제외 사유

- 다른 법령(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가족채용 제한 적용 제외(법 제11조제2항제1호)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함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법 제11조제2항제2호)

3 가족채용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 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부터 확인서(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받음이 원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 적용 대상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2 제한 내용

- 공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3 수의 계약의 범위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 등에 따라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일부 원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되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계약 부서)를 통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사업 부서)를 통한 수의계약이라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

4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받는 대상자 범위

[공직자]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와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 제1항제1호·제2호)

-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감
-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 제1항제3호)
-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에 소속한 고위공직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4호)
-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조사권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법 제12조제1항제5호·제6호)

[공직자의 가족]

-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7호)

[법인]

-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제12조제1항제8호)
-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법 제12조제1항제9호)



-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 30%·지분 30%·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
- ※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인적 제한으로,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 재공고입찰로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예외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6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14조제2항)
-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 공공기관 계약담당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관련 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1항 각호의 대상과의 수의 계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기관(학교)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제한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의 물품·시설 등을 소속 공직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1 적용 대상

- (제한 대상자) 모든 공직자

2 제한 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 구급차 등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중유

☞ 적용 제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예시)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시행)에 따른 공용차량 운영 등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적 부패행위를 넘어 공정한 자원배분 및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

1 적용 대상

- (제한 대상자) 모든 공직자, 제3자
 - 제한 대상 ‘공직자’에는 퇴직 등으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
 - (제한행위)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사적 이용을 금지

2 제한 내용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 (직무상 비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시점)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현실화와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매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함
- 제3자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



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법 제14조제2항)

- ▶ 제3자가 공직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임을 모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제외하고,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비밀 등의 사적 이용 금지]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금지

- 사적 이익이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실현과는 무관하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사적인 이용 자체를 금지함
- 공직자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을 금지함
 - ※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이용, 대학입시 관련 시험문제 유출·이용 등
-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법 제14조 제1항)
 - ▶ 해당 미공개정보와 관련된 직무 담당자 뿐 아니라 타 부서 등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전부를 포함하여 규율
 - ▶ 도로개설계획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정보는 해당 정보가 일반 국민 등 대외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함
- ※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직원A가 정비사업 수행 중 내부 정보를 통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관할 지자체에 설계변경을 건의해 자신이 보유한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경우, 설계 변경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함

IV

이해충돌 사전 예방



1 이해충돌 관리 절차

① 이해충돌 직무 발생

- 공직자가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발생



② 이해충돌 확인(공직자)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진단

- 직무 내용 진단
- 개별 직무의 직무 관련자 진단
-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진단
- 제3자 또는 객관적 입장에 의한 진단



③ 이해충돌 상담 또는 직무 회피 신청(공직자)

- 자가 진단 결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 신청



④ 상담 및 기록관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

-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



⑤ 상담결과 보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

- 사적 이해관계 내용,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등 상담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⑥ 이해충돌 관리 조치 (소속기관의 장)

- 이해충돌 상황의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 허용, 일시적 직무 재배정, 인력 재배치 등 조치

2 이해충돌 사전 체크리스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	「형집행법」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직무



Check List 2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3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Check List 4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국·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 공직자를 법령·기준·사실상 지휘·감독하였던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공직자는 규칙으로 부서의 범위를 별도 규정 가능
☐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친족 제외)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거래 상대방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자신
☐	공직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공직자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Check List 3

거래 행위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heck List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종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발생

체크	체크 항목
☐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 경우
☐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인 경우
☐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인 경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퇴직자 사적 접촉 관련으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종료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퇴직자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퇴직자를 접촉한 경우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Check List 2

퇴직자 사적 접촉 유형이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Check List 3으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Check List 3

사적 접촉 퇴직자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가족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채용 방법이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하지 않고 종료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대상자가 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대상자가 된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 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Check List 2

채용대상자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할 수 없음
해당이 없는 경우 채용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의 대상이 아님

체크	체크 항목	
-	채용하려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채용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계약상대방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아님으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공직자(①~⑥)의 배우자
☐	⑧ 공직자(①~⑥)의 직계존속·비속
☐	⑨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⑦)의 직계존속·비속
☐	⑩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자(①~⑥)이거나 가족의 범위(⑦~⑨)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⑪ 공직자(①~⑥), 배우자(⑦) 또는 직계존속·비속(⑧,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Check List 2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	체크 항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 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체크	체크 항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 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 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V

위반행위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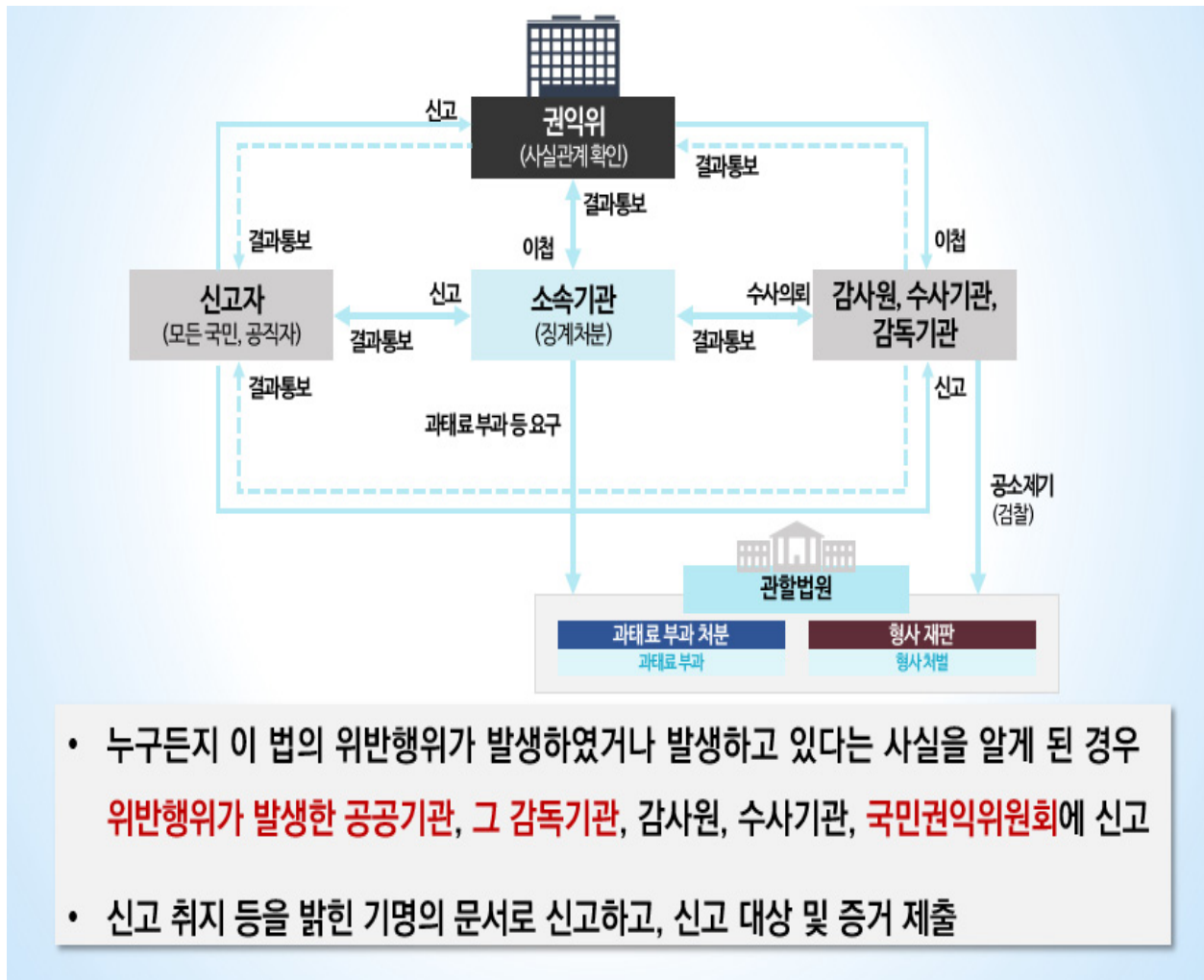
1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의 구분

- 공직자가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
(법 제5조 1항·제6조제1항 및 제2항·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5조제1항)
-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신고
(누구든지 가능)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법 제18조 1항)

- (방법)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 ▶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등
 -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등
 - (법인·단체의 대표자) 대표자의 성명·연락처·직업,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성명·연락처·직업, 법인·단체·개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내용
 -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 (제출)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신고기관)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 감사원,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및 제한 관련 가족의 범위

구분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별 가족의 범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채용 제한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수의계약 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VI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 징계 및 형벌부과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14)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1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1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과태료 부과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11)	3천만원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1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5)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6)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9)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10)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13)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8)	1천만원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5)	

VII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2조(정의)

- 본청: 감사관
- 직속기관: 운영지원부장(운영지원과장)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각급학교: 교감(원감) 다만, 각급 학교에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자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3 이해충돌 방지 교육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매년 교육계획을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지원 내용 참고사항 >

지원 유형	활용 방법
청렴연수원 원내 교육수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www.edu.acrc.go.kr) 공지사항 내 '월별 청렴교육 신청 안내' 게시물 참고 ※ 각급 기관 대상 '2022년 청렴아카데미 연간 운영 계획' 공문 旣 시행('22.1.24.)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강사 출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제도 운영 담당자 (☎043-901-6146) 유선문의로 출강 요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활용	<표준강의안> 청렴연수원 홈페이지(www.edu.acrc.go.kr) 청렴교육 참고자료 게시판 참고 <사이버 교육 영상자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로 자료요청 공문 시행 후 공유 가능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www.acti.nhi.go.kr)를 통해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수강(매월 운영)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2. 4월 개설) ※ 공직유관단체 한정	나라배움터 이용이 불가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별도의 사이버 코스웨어 과정 개설 예정으로, 각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문시행 예정('22.4월초)

[별첨]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9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 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회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회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나 개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 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3230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시행 2022. 6. 30.] [경상남도교육훈령 제177호, 2022. 6.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경상남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본청: 감사관
 - 나. 직속기관: 운영지원부장(운영지원과장)
 - 다.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라. 각급학교: 교감(원감) 다만, 각급 학교에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공립학교의 교직원(이하 “공직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교육감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호, 2022.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 ·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 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거래내용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기관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처리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